

보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구 회30320-116	전화번호	731-6351	전 결 부 청	4 조 1 항
처리기간		시	장	부	시 장 권 결 사 항
시행일자	'85. 12. >은	1569			
부존연한	영 구				

*김민*

부	부	시	장	전	결
조	도	시	개	회	국
기	구	회	정	리	과
관	장	관	장	관	장
기	안	책	임	자	
	영	동	2	지	구
	회	정	리	사	업
	지	구	일	부	토
	지	구	일	부	토
	지	구	일	부	토

성	유	수	심	조	발	행	통	보
				관	인	참	조	
세	부	영	동	1,2	지	구	회	정
								리
								사
								업
								지
								구
								일
								부
								토

(제 1 안) 내부 검사

1. '68. 1. 18(건고 제6호), '69. 11. 28(건공 제720호) 및 '71. 8. 20(건공 제72호)자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사업시행 인가를 득하여 시행중에 있는, 영동 1,2지구 일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에 대하여 환지확정 처분에 따른 환지구획 변경로자 서공 제 608호('85. 10. 16)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공람 공고한 바 있는 토지의 확정측량 및 공사를 완료하고 환지처분에 따른 작업이 완료되어 청산금이 결정 되었기 별첨 확정도서와 같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61조의 규정에 의거 환지처분코 자 합니다.

가. 사업명 : 영동1지구 및 영동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나. 이산과목 : 영동토지수무비, 사무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

다. 이산액 : 1,522,660 원(4 단×11×15,730×1.1×2=1,522,660 원)

라. 지출방법 : 신문공고후 청구에 의함.

첨부 환지확정 지정서 각1부.

(제2안) 공 고 안	1985. 12. 2
서울특별시공고 제 호	
환지처분공고	권장
<p>1. 우리시가 '60. 1. 18, '69. 11. 28, '71. 8. 20자본 건설부장관의  로부터 인가를 얻어 사업시행한 영동 1지구 일부 및 영동2지구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내 토시에 대하여 공사가 완료되어 다음과 같이 환지처분 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61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 강남구청 시민봉  사실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하며, 서류송달  은 토지소유자에게 별도 통보할 것이나 미수령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  인은 이 공고로 같음합니다.</p>	
1985. 12.	
서울특별시장 염 보 현	
다 음	
<del>가. 사업명</del> : 영동1지구 및 영동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del>나. 환지처분대상위치</del> : 강남구 반포동, 삼원동, 서초동, 신사동 안구성동, 청담동, 학동, 역삼동, 도곡동 각 일부	
다. 환지처분면적 : 5,204,987.4㎡	
라. 관계도서의 열람	
<p>1) 환지처분 내용 : 지번, 지목, 지적 증감에 대한관계  도면은 우리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와 강남구청 시민봉사실에서 열람</p> <p>2) 청산금 : 우리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에서 열람</p>	
<p>마. 공부정리 : 지금까지 사용하던 공부상의 지번, 지목, 지적은  환지처분 내용에 의하여 변경 되었으므로 변경된 사항은 우리시에서 공부물  정리할 것이나 징수청산금 납부대상 토지는 청산금 납부 즉시 정리되며  채비지 소유자는 우리시 재무국 관제과에서 이전등기 절차를 취하시기</p>	

바라며 (구 비서류 : 매도증서 및 위임장 고부신청서(소정양식) 체비지기약서 및 명의변경승인서, 확정된 토지대장등본 1부, 매도증서 및 위임장 각 2부).

바. 청산금의 징수고부 : 청산금의 징수 및 고부 대상의 토지에 결정된 청산금은 공부의 엄담후에 별도로 통지할 것이나 징수청산금은 납입고지 이전이라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제 3안)

수 신 수신처 참조

제 목 같은건

1. 우리시가 시행한 영동1지구 일부 및 영동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귀하의 토지에 대하여 사업이 완료되어 별첨 공고문 사본과 같이 환지확정 처분 하엿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 합니다.

따로붙임 : 공고문사본 및 환지확정 지정서 1부.

수 신 처 : 별첨 환지확정 지정서 소유자 명단.

(제 4안)

수 신 강남구청장

제목목 같은건

1. 우리시가 시행중인 영동1지구 일부 및 영동2지구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토지에 대하여 따로붙임 공고문 사본과 같이 환지확정처분하엿기 통보하니 다음 사항을 조치하기 바람.

가. 따로붙임 공고문 사본과 같은 내용을 귀구청 및 해당동사무소에 개사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일 것이며

나. 신규지번 대조 도서는 해당 동사무소 및 관계기관에 배부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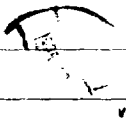
다. 별첨 환지확정 도서를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엄담에 공할것.

다. 본 환지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현재 발급하고 있는 환지
이정지 증명은 발급 중지하고 환지확정 증명으로 대체하여 신동명, 지번, 지목
지적 및 권·면적을 명기하고 "구획정리 청산금 확인요함" 및 소유권 이전
"재산권행사 등기는 별도 자세한 내용 확인요함"이라고 표시하고 기타
도시계획 사항을 표시할 것.
따로붙임 : 1. 공고문 사본 1부.
2. 환지확정 서정서 및 도면 1부.
3. 신규지번 대조표 5부.
(재 5안)
수 신 건설부장관
참 조 도시개발과장
제 목 업무보고
1. 우리시가 시행하고 있는 영동 1지구 일부 및 영동2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의 토지에 대하여 따로붙임 공고문 사본과 같이 환지확정처분
하였기 보고 합니다.
따로붙임 : 1. 공고문 사본 1부.
2. 위치도 1부.
(재 6안)
수 신 서울민사지방법원장
참 조 강남등기소장
제 목 환지처분 통지
1. 우리시가 시행하는 영동1지구 일부 및 영동2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토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환지
처분 공고하고 농법 제 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하오니 드려나 업무처리
(환지추탁등기시까지 일반등기 중지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1. 신규지번 대조도(지번명세서) 1부.

2.	2. 공고문 사본 1부.
(제7안)	
수 신 관제과장	
제 목	완지처본에 따른 공공용지 관리
	1. 우척시가 사업시행중에 있는 영동1지구 일부 및 영동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에 대하여 따로붙임 공고문 사본과 같이 완지처본 되었음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 및 동법 제64조에 의하여 통보하오니 귀소관 자삼의 관리 처리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공고문 사본 1부.
(제8안)	
수 신 행정과장	
제 목	같은건
	1. 우척시가 시행한 영동 1지구 일부 및 영동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에 대하여 따로붙임 공고문 사본과 같이 완지처본 하였던 통보 하오니 업무처리에 착오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1. 공고문 사본 1부.
	2. 신구지번 대조표 1부.
(제9안)	
수 신 공보관	
제 목	관(식)보 게재 및 신문공고 의뢰
	1. 아래와 같이 관(식)보 게재 및 신문공고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게재구분 : 공고
	나. 게재건명 : 영동1지구 일부 및 영동2지구 완지처본 공고
	다. 근거법규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 5항
	라. 신문 게재단행 : (3단×10.4×17, 140×1.1×2)

마. 개재신문 : 2개입관신문(초간및 석간)

따로붙임 : 공고문 사본 6매.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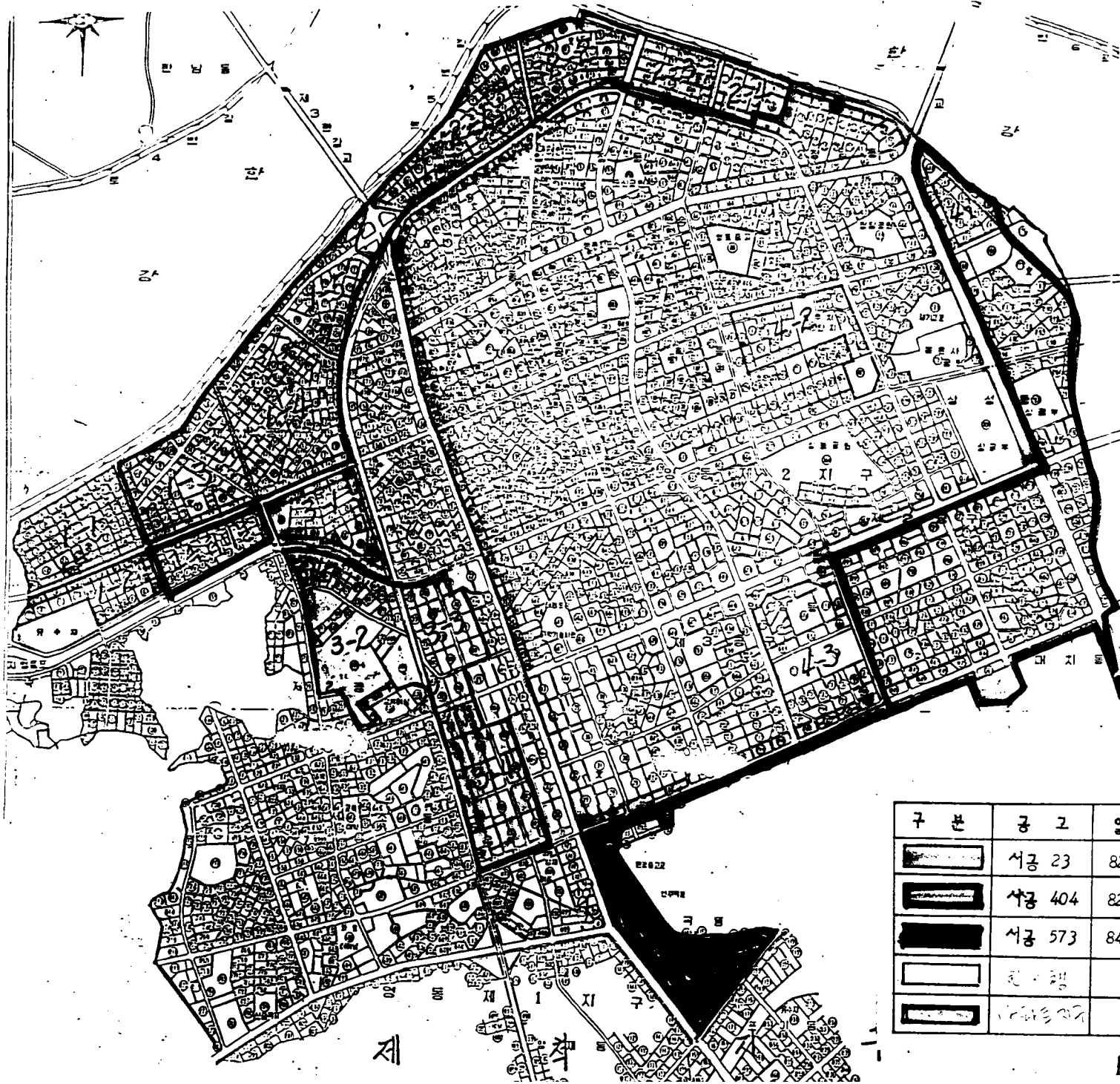
공람공고 (서울시공고 제 508호 '85. 10. 16자) 이의 신청 및 처리 내역






번호	토지소재	소유자	이의신청내역	처리내역	비고
1	강남구 반포동 63-2 (산45-1)	강남구 논현동 213-5 (주) 신동진 윤 비수	· 공사불능지토지도 보상 대상토지이므로 증명되는 면적(96.7평)공약과(청산금단가) 보상금약율(단가)입지 시켜줄것	· 현금보상키로 결정된 토지이므로 관할구 창에서 공사불능지 조속 보상금 지급토록 추구 ·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 조속수령토록 회시	· 예산확보하이 구청에서 소유자 에게 기동보
2	강남구 반포동 산 21-27(296- 산 21-29 39%)	강남구 방배동 992-7 서 명 수	· 확정추방으로 인하여 줄어든 면적을 인접토지 에서 확보 요청	· 인접토지(산21-31, -30)도 면적이 줄 어있으며 심지건물 담장산대로 확정 추방된것으로서 경계선 조정 불가	
3	강남구 서초동 1552-9 (529 -8 8%)	강남구 서초동 850-6 오 원 표	· 예정지 당시 7필지토지였으나 확정추방이 2필지로 되어 있으므로 합필 요청	· 합필 처리	
4	강남구 서초동 1022외 6필지	강남구 신사동 339 (주) 롯데건설	· 7필지 토지가 전부 소유자 동일하므로 합필 하이 건축할 예정이오니 7필지로 합필요청	· "	
5	강남구 반포동 571-8	강남구 반포동 571-8 김 민 희	· 부족되는 면적 인접토지와 합필 요청 (신지번 80-9)	· 80-9(2.3평)토지는 종전지번 571-5 토지를 경계선 침범한 것으로 소유자 상방간이 합필토록 회시	
6	강남구 잠원동 27-8, -12	강남구 신사동 485-1 김 승 세	· 현재 1필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예정지 당시 1필지로 확정시 면을 1필로 합필 요청	· 합필 처리	
7	강남구 반포동 83-5	압구정동 309 현대아파트 22동 1006호 김 병 구	· 부족되는 면적 추가 확보요청(감 8.3평)	· 경계선은 완지어정지와 일치하게 확정 추방된 것으로 부족분은 고부청산금으로 지급	

번호	토지소재	소유자	이의신청내역	처리내역	비고
8	강남구 서초동 산150 - 2	용산구 이촌동 301-170 조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현동 162구위에 한지 지정된 1,174.7명이 한지 확정처분에서 제외된 이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전토지 면적이 있어서 지적도와 토지대장면적이 불일치 되어 포함할 수 없으므로 저구개 포함이 불가한 상비임.</li> <li>지정법 제 38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청에 등록사항 정정 (면적조정) 신청후 처리가능한 실정으로</li> <li>본 토지는 포함처리시까지 처분 보류</li> </ul>	'85.12.18 행정심판 청구중으로 재결 결과가 따라 추후 결정함.
9	강남구 반포동 612 (190 - 1구위)	중구 신당동 291 - 29 김혜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구개 측량결과 반포동 612(25.7평) 토지가 한지 확정 면적이 없음으로 인한 하경 방안 요구</li> <li>이의신청 기간내 토지소유자 열람 하고 대책을 의논하고 금전으로 청산토록 증용하였으나</li> <li>토지소유자의 정확한 의견은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지예정지의 면적이 25.7평으로서 당초부터 임박치미만 으로 건축이 단독으로는 불가한 토지였으므로 다동한 위치도 다보 처리시 증명이 불가피하여 영평에 맞지 않음으로 고부첨산금으로 처리</li> </ul>	같은 사안임지 (반포동 113-6호) 반포동 113 -7호 는 자체 고부첨산금으로 처리
10	반포동 산 85 - 40 - 41	강서구 신정동 169 - 8 이영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유권 행사 난이 (일부 확정지구 내에 편입되어 있으나 한지된 바 없음)</li> </ul> <p style="text-align: center;">85.12.20 부시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지예정지 당시부터 제외된 토지임.</li> <li>한지지구라도 일반도시계획로 도로확장 (=75) 시설 결정 되었으나 현재로서는 중전토지가 지구내 포함 여부가 명확치 못하여 지적 소관청에 조회중으로서</li> <li>포함 여부에 따라 추후 52조 금전청산토지로 처리</li> </ul>	
11	서초동 산 120 -21	강남구 방배동 942-13 유문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원부지 확보에 의한 본 토지 매지 발생</li> <li>'85.8.22 한지예정지 변경공람공고 (매지하경)</li> <li>부지연장 발생에 따른 14.5명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하게 징수청산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도로 처리할 시 본 토지는 16.9명이 증환지가 발생되며 택지이용도가 낮은 14.5명을 대지면적에 포함 징수금 가중 시킬은 부당한 것으로 사료됨.</li> <li>공도로 처리시는 평가액인 1,450만원(14.5 × 100만원/평) 의 손실액이 발생됨</li> <li>본 토지를 인접 1714 - 8호 및 9호 체비지의 평가액에 의거 권리면적 개산하여 위치변경 한지처분 하고(증환지 29.8평</li> </ul>	



번호	토지소재	소유자	이의신청내역	처리내역	비고
			을 남부하이아 비로 공도로 지정 또는 인접 1714-18호 및 9호 체비지로 의치 변경을 요청	발생) · 본 진정보지 1714 - 34호 토지를 체비지로 변경처분 하여 민원을 하소 · 별첨 가각조서 및 비고조사서 참조	
12	강남구 신석동 산 31 - 2	용산구 한남동 653 - 6 관 중 한 	· '77.11.17자 진정 회신문에 환지 확정처분으로 인한 금전청산시 청산 토록 회신한 바 있으나 · 이정지 조서상 계속 누락되어 있는 토지임. · 구두 신청임.	· 지구내 토지가 분명하고 환지대상으로는 1필지 미만 으로서 금전청산토록 조치	도행431.4- 65859 ('77. 11.17



구분	공고	일차
	서공 23	82.1.18
	서공 404	82.9.20
	서공 573	84.9.25
	한·행	
	기타	